

통지서

2012 년 6 월 11 일

수 신 : 노블레스 맞춤정장 / (이하 '을')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 센터 1 층 155 동)

발 신 : 신재호 / (이하 '갑')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 2 가) 파인애비뉴 B 동 25 층)

제 목 : 맞춤셔츠에 관한 약속 불이행 건

'갑'(신재호)과 '을'(노블레스 맞춤정장) 사이에 2012 년 5 월 15 일 체결된 맞춤셔츠 구매(대상물건: 맞춤셔츠)와 관련하여 '을'은 아래 사항을 불이행 중인바, 2012 년 6 월 14 일까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을'은 맞춤셔츠에 관한 검품과 사이즈 부정확 디자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바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이에 시비가 있어 언성이 오가고 서비스업종의 '을'이 '갑'에게 보여준 행동 (젊은놈이 꼬장 피운다. 안파니까 가라.) 때문에 겁이나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점 물품을 검품하지 않고 보낸 '을'의 태도에 불신을 느끼는바 환불을 요청함.
2. '을'은 처음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점과 약속의 불이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점을 '병'(그루폰 코리아)에 통보하겠다는 '갑'의 요구에 시비가 있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공산품 II 의 15 항 의복류), 소비자보호법 (제 12 조), 소비자보호법시행령(제 10 조, 제 12 조)에 근거하여 통보함.

'을'이 2012 년 6 월 18 일까지 위 사항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고소 및 고발, 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용 및 제반 사항에 대한 경비는 사업자에게 청구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

이 우편물은 2012-06-11
제 314950401049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충무로2가우체국장

